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가구원 수	30	5인 이상	30	○ 동거인 미포함 * 단,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동거인으로 표시된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 ○ 신청자 포함 * 증명서류 : 주민등록등본
		4인	26	
		3인	22	
		2인	18	
		단독세대	5	
무주택기간	20	10년 경과자	20	○ 한부모 등록시부터 무주택 기간 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* 한부모가족 자격 중단 후 다시 자격을 얻은 경우 중단된 기간 제외하고 합산함 * 증명서류 : 지방세 세부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증명
		8년 경과자	15	
		6년 경과자	10	
		4년 경과자	5	
		2년 경과자	2	
특별공급 대상지역 거주기간	20	5년 이상	20	○ 실제 거주기간 * 증명서류 : 주민등록초본
		4년	16	
		3년	12	
		2년	8	
		1년	4	
		1년 미만	1	
근로기간등 자활의지	20	24개월 이상	20	○ 입주자신청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근로 합산 기간(신청자 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) * 근로기간은 국토부 훈령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별표6에 따른(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) * 증명서류 : 근로기간 입증 서류(신청자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등)
		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	16	
		12개월 미만	12	
		해당사항 없음	0	
	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10	
아동 장애 여부	10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5	* 증명서류 : 장애인 증명서
		해당사항 없음	0	

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증명서류

유형	구비서류	구비기준	유의사항	필수 여부
증빙서류	[증빙] 주민등록등본 *읍면동 주민센터 발급	한부모 신청자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), 세대구성사유 및 입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	○
	[증빙] 주민등록초본 *읍면동 주민센터 발급	한부모 신청자	•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사실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	○
증빙서류	[증빙] 장애인증명서 *읍면동 주민센터 발급	해당자	• 신청자 외에 접수신청에 포함되는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	○
	[증빙] 지방세 세부별 과세증명서 *읍면동 주민센터 발급	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	가. 과세내역 있는 경우 • 전 세대원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발급 요청 • 최초 한부모 등록일로부터 최근 10년 내 전국 단위로 조회하여 세대원 전원의 주택별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-x) 한부모등록 '15년' 최근 과세 '13년'이면 '15년~현재 과세내역 제출(다른 세대원도 '15년부터~현재까지) 발급 지역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시 재산세 납부 내역 있는 지역으로 조회 발급	○
증빙서류	[증빙] 건물 등기부등본 (등기사항 증명서) *등기소 or 인터넷 발급	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	나. 과세내역 없는 경우 * 재산세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, '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'이라고 기재된 전국 단위로 조회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	
	[증빙] 건축물관리대장 *시군 건축부서 발급	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	• 지방세(주택분 재산세 항목) 납부지에 한해 제출(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) • 주택 매각 시, '갑구', '등기접수일' 확인(매각일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) • 주택을 여러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건물등기부등본 제출	
[증빙] 무주택(건물관리대장) *시군 건축부서 발급	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	• 지방세(주택분 재산세 항목) 납부지에 한해 제출(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) • 주택 매각 시, 소유자현황 '변동일' 확인 • 배정기준표 무주택기간 산정 시, 정확한 매각 일자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 •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기간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	• 2006.5.8 이전 '건축법'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(연면적 200㎡ 미만)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축물확인원(공문)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	

※ 대상자 추천 양식,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증빙서류 사본 제출